

- 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사와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

- 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중)

○본 개정조례안중,

-案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8월 31일자 로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우리시 조례중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규정한 조례는 본 조례를 포함하여 모두 6건이고, 그 현황은 별지1과 같으며 이번 동 조례 개정시 모두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6건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번 회기중에 별도로 개정할 예정이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위의 개정내용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案 제31조(시장이 주민에게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써 진작 삭제되었어야 할 조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1명, 출석위원 9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p>의안 번호 815</p>	<p>2001. 3 재정경제위원회</p>	<p>1. 법륜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중)</p> <p>【총괄부문】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결과에 따라 집행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조문의 뜻이 불명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염려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임.</p> <p>【세부사항】 ○개정안 제10조제2항1호는 “기타의 사유”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동 조항을 명확히 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동일한 의견이었으며, 또한 기타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17조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시보조금 지원사업 중 동 조항을 위반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2000년도에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일부가 제한된 경우가 2건 있었을 뿐이며 2호에 가능성이 “없는 때”와 “명백히 없는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1명, 출석위원 9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	----------------------------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타의 사유”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가능성이 없는 때”를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중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중 “경제여건변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환경오염방지”를 “경제여건변화, 환경오염방지”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 중 “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를 “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을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중소기업지원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시제품·기술·연구개발 등을